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김수완*
(강남대학교)

김상진
(강남대학교)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분야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자영자, 공·사 연금, 연금가입, 다층노후소득보장

이 논문은 2010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 김수완, 강남대학교(soowankim@hanmail.net)

■ 투고일: 2012.1.31 ■ 수정일: 2012.3.2 ■ 게재확정일: 2012.3.12

I. 머리말

본 연구는 다층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자영자의 연금 가입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자영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자영자의 이슈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논의는 암묵적으로 주로 임금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영자에 대한 관심은 낮았다.

이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급여적 절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다층체계 구축 논쟁은 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간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직연금에 적용받지 않는 자영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주어질만한 논의의 틀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논리는 퇴직연금 도입을 계기로 다층체계 구축을 통해 하향되는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퇴직연금 중심의 ‘다층체계 담론’ 속에서 자영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고 다만 자영자들이 자발적으로 3층의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전제되어왔다. 그러나 정작 얼마나 많은 자영자들이 공·사연금(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특징을 지닌 집단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측면에서도, 사회적·학문적 관심은 자영자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배제에 집중되어왔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이 일차적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는 1999년,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국민연금은 최종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됨으로써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가 되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영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확충의 필요성을 들어 제도 확대를 강하게 주장한 결과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지 11년 만에, 피용자에게 적합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 틀 내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자를 포괄하는 것이 한국의 소득과악력과 행정력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가라는 회의를 제기했었다.

결과적으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직후부터 국민연금은 법적 적용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에 끊임없이 시달려야했다. 지역가입자의 높은 납부예외율은 그 핵심적인 근거 지표로 제시되어왔다. 2000년 당시 27.6%였던 납부예외율은 2011년 6월 기준 25.2%로 크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연금 가입에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양대 집단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자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은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고용주의 회피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권이 침해받는 피해의 문제로 인식된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비적용 이슈는 이견없이 사회적 ‘배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복잡적이다. 첫 번째 시각은 자영자의 보험료 미납을 법적 강제를 회피하는 제도외의 불순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견해이다. 소득과악력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자영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인 근로자에 비할 때 불투명하며, 소득하향신고를 통한 탈세와 보험료 납부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기준 근로자의 소득과악률은 82%인데 비해, 자영자의 소득과악율은 57.1%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중앙일보, 2009).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자영자 집단이 (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소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의 시각에서는 자영자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낮은 저소득집단임이 강조된다. 자영자와 근로자와의 소득격차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현재 자영자의 연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다(경총경제조사팀, 2007). 특히 고용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의 자영자들은 의도적인 회피집단인가? 혹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인가?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가 전체평균소득에 연동되도록 한 급여산식에 의해,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는 성실한 소득신고자인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고 자영자에게 기여에 비해 유리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제기들을 통해 자영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면서, 자영자 집단의 사회적 위험에의 대응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자영자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들이 자영자를 구중간계급으로 규명하고 동질적인 속성을 가정하였던 것을 비판하고,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한편(이병훈·신재열, 2011)²⁾, 변화하는 경제구조 하에서 자영자의 규모와 속성이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EU, 2010; Buschoff & Schmidt, 2010; Kautonen et al.,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자영자 집단은 내부에 큰 소득 격차와 다양성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기본적인 관점 하에, 공사연금 가입과 관련된 상이한 행태를 분석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영자들의 노후소득보장에 가져올 상이한 결과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복지국가에서 자영자의 성격과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자영자의 공사연금 가입 형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및 주요 변수, 분석 방법 등의 연구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V장에서는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자영자와 노후소득보장

1. 자영자의 속성과 사회보장에의 함의

노동자의 권력투쟁의 산물로서든 자본의 필요에 의한 회유책으로서든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대립 속에서 발전해온 서구 복지국가의 확장기에 전통적인 자영자 집단은 복지국가의 핵심 세력이나 주요 정책 대상은 아니었으며, 노동계급과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그 주요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에서 자영자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생산수단을 소유한 ‘구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 집단이었다(김영순 1997:56).

2)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자의 소득실태나 일자리의 질 등의 경제적 성과나 진입·퇴출 이동성 등에 작용하는 인과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노동경제학 연구(이병훈·신재열, 2011)들도 존재한다.

주로 자영농과 기술자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자영자 집단은 토지나 기술 등을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자영자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자영자는 퇴직 시기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고연령층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으므로 실업이나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자영자의 규모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크게 축소되어 자영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국가 황금기를 거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사회보험은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장은 뒤로 미뤄지거나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곤 했다.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에서 자영자는 연금이 도입된 지 수십년이 지난 1982년에서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되었고,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직역별 전통이 있는 국가들에서 자영자는 근로자와 분리되어 별도의 직역연금에 포괄되고 있다(DHHS, 1993). 기초보장적 연금제도를 지닌 미국에서는 하나의 연금제도에 자영자와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자영자 집단별로 15년에 걸쳐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³⁾(SSA, 2003)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자영자는 여러 속성에 있어서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영자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는 근로자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존재해왔다. 이병훈과 신재열(2011:252)은 그동안 자영자의 계급적 지위나 정치사회적 이념 및 태도에 관해 혼란스러울 만큼 상충되고 다양한 연구 이론과 결과가 도출되어온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자영자들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정치이념적 태도에서 동질적이거나 결속력이 높은 집단이라기보다는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갖는 하위집단들의 집합적인 범주로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직역별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발전시킨 프랑스의 경우 자영자의 요구에 따라

3) 미국에서는 비농민자영자(전문직종사자제외)(1950), 농촌자영자 및 일부전문직자영자(1954), 의사제의 전문직(1956) 자영업의사(1965)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SSA, 2003).

자유 전문직, 산업 및 상업 부문 자영자, 예술인, 농업인 등의 네가지 집단에 대해 분립된 제도가 설립되었다. 각 제도는 각 자영자 집단의 상황에 따라 보험요율 등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는데, 각 집단 내부의 빈곤한 자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었고, 따라서 급여수준은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넘지 못했고 부유한 자영자에게는 연금급여가 충분치 못한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다(Baldwin, 1990:177).

최근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자영자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영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자영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과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인력 차원에서 보면, 첫째, 실업률이 증가하고 만성실업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장기실업자, 청년 및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통적인 자영자와는 다른 취약한 자영자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김경아·한정림, 2011). 둘째, 사람들이 자영업을 점차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선택지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보다는 일에 있어서의 자율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 차원을 보면, 첫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위험을 외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계약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피용자가 담당했던 일들은 이제 하청(subcontracting), 외부화(outsourcing)나 프랜차이즈(franchising)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자영자의 증가를 낳고 있다(Buschoff & Schmidt, 2010). 둘째, 운수나 유통 등의 전통적인 서비스 부문이 정체되고 대신 교육, 건강, 금융 및 기업 서비스 부문이 증대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새로운 자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Buschoff & Schmidt, 2010).

이러한 변화들은 자영자의 속성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더하게 된다.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자영자 집단이 근로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설명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들 ‘신자영자(new self-employed)’는 근로자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Buschoff와 Schmidt(2010)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에 의한 자영자 형태가 점차 수렴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영자가 하나의 주거래처에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자영자가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적으로 고용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등의 양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autonen 외(2009)도 고용과 자영간의 불분명한 영역에 위치한 불안정한 자영업이 새롭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처럼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밀기(push) 효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고,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유사 자영계약을 통해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비자발적 자영업’(involuntary self-employment)으로 명명한다.

둘째,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증가하는 자영자 집단은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고 취약근로자와 사실상 다르지 않은 열악한 지위에 놓인 자영자층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갖추고 일의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자영자층이 형성되는 등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들은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데에도 대체로 유효한 것 같다. 김유선(2007)에 따르면, 자영자는 근속년수와 이직률을 지표로 따져볼 때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 일자리에 매몰된 비용 때문에 이직하지 못해 근속년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의 자영자들의 상당수는 ‘비자발적 자영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자 내부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심하며, 자영자 중에서 시간당소득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람이 21%이고, 저소득계층은 38.4%로 임금근로자보다 저소득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김유선 2007).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자의 비율은 26.5%로 OECD 25개국 평균인 14.4%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며, 1990년대 이후 자영자 비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경총경제조사팀, 2007). 요컨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증가하는 대다수의 자영자는 취약 근로자와의 불명확한 경계로 특징 지워지며, 따라서 취약계층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다. 반면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비해 제도적으로 덜 보호받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 즉 (고용주의 부담분이 고려된) 표준 근로자의 부담능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급여 적절성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된 공적연금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무거운 반면, 부유한 자영업자들에게는 급여가 너무 낮은’(Baldwin, 1990:180) 딜레마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연금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 여력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낮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관련 선행연구

최근 유럽에서는 자영업이 확대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나 불안정한 유사 자영업자의 문제에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현황과 추세 등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로는 European Commission(2010a)을 들 수 있고, European Commission (2010b)은 유럽 국가들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내용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Buschoff와 Schmidt(2010)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신자영업자 집단의 구조와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였다. Kautonen 외(200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비자발적 자영업자의 현황과 정책적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최종균(2009)은 한국을 포함한 30개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공적 연금 정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한국의 자영업자 관련 연구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금재호 외, 2009; 이승렬 외, 2009; 최강식 외, 2007)이나, 자영업에의 선호나 진입 및 지속 결정요인(이철희, 2008; 전병유, 2003; 안주엽·성지미, 2003; 류재우·최호영, 2000) 등의 노동경제학적 접근이 다수를 이룬다. 자영업자의 정책 순응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축소(김봉근 외, 2008) 혹은 탈루(박명호, 2010; 홍정화·김완희, 1997; 이양현·최임수, 1997)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김상진(2009)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회피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저소득 자영업자는 경제적 부담에 의해, 일반자영업자는 계산된 효용에 의한 기여회피가 많음을 밝혔다. 김성숙과 강성호(2004)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는 자이며,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들로는 김경아와 한정림(2011), 강성

호 외(2008), 이용하(2000) 등의 연구가 있다. 김경아와 한정림(2011)의 연구는 자영자의 국민연금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에서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자영자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한 포괄적인 정책연구이다. 이를 제외하면 다른 정책연구들은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납부예외자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요컨대 한국에서 자영자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영자의 정책 불순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관련 연구들은 자영자의 특수성보다는 납부예외자를 포괄한 지역가입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다층적 관점에서 가입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자의 공·사연금 가입형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자영자 내부의 다양성과 현황을 밝히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자료이다. 이 패널은 우리나라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및 차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전국민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로서, 정책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 다만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자영자’는, 패널조사 자료에서 본인의 종사상 지위를 묻는 항목에서 자영자라고 응답한 사람과 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사람들로 정의하도록 한다⁴⁾.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은 본 연구에서 제외

4) 엄밀한 의미에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통계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자영자는 ‘자기 혼자 혹은 무급

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분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 분석은 공·사 연금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 변수는 명목(nominal)변수로서 ‘연금미가입’과 ‘연금가입’의 이분(dichotomous)변수이다. 즉 이 변수는 공·사연금을 막론하고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포괄되어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공적연금 가입은 국민연금에의 실질적인 기여순응자만을 의미한다. 즉 명목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을지라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면 미가입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화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패널조사 설문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묻는 질문에 ‘납부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공적연금 가입자로 규정하였고, 공적연금 가입형태를 묻는 질문에 ‘미가입’으로 응답한 사람들과, 미납유형을 묻는 항목에서 ‘보험료미납’에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미납유형 중 ‘납부예외자’를 합하여 보험료 기여회피자로 간주하여 공적연금에 미가입한 자로 정하였다. 사적연금의 경우, 패널조사 설문지에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가입’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합하여, 사적연금에 가입한 자로 정하였고, ‘미가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였다.

그러하여 첫 번째 종속변수인 ‘연금가입여부’는 위에서 언급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등에 하나 이상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을 ‘연금가입(1)’으로 하고,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는 집단, 다시 말해 소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을 ‘연금미가입(0)’으로 정한다.

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주와도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자의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 따라 자영자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김경아·한정림,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입금근로자 전체를 노후소득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무급가족종사자를 연구에 포함시켜 자영자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은 상기한 연금가입여부 변수에서 연금가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가입자들의 연금선택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선택유형’ 변수는 종속변수 ‘연금가입여부’에서 연금가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금선택유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유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가입한 다층형이며, 두 번째 유형은 공적연금에 강제 가입한 것 외에는 다른 사적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연금 순응형 집단이고, 세 번째는 공적연금을 회피하고 사적연금을 선택한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그리하여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 집단은 공사연금 가입행태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 공사연금 가입에 따른 자영자 집단의 구분

구분		공적연금(국민연금)	
		미가입	가입
사적연금 (개인연금)	미가입	연금 사각지대	공적연금형
	가입	사적연금형 (국민연금 회피형)	다층보장형

나. 독립변수

자영자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배제나 연금 사각지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김수완, 2009; 구인회 외, 2007; 석재은, 2003)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및 소득수준, 업종 등이 중요한 가입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인구사회학적 요인), 사업지역, 업종(사업관련요인), 소득수준, 금융자산유무(경제적 요인) 등 일곱 개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종속변수 ‘연금가입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또 다른 종속변수인 ‘연금선택 유형’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는데 공통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기초조사항목의 태어난 년도를 연령으로 환산하였고(연령=2008-태어난 년도), 성별

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재 코딩하여, 여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세분화된 패널의 서열척도를 단순화하여 저학력=1, 중간학력=2, 고학력=3의 세 범주로 나누어 서열변수화 하였다. 사업지역은 서울과 광역시를 대도시로 묶고, 시를 중소도시로 정하고, 군과 도농 복합군을 합하여 농어촌으로 재코딩하여 범주형 변수로 조작하였고, 기준범주는 농어촌이 되었다. 자영업종은 음식 및 도소매업, 농어업, 제조 및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의 넷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만들었다.

경제적 요인 중 소득수준은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정보 중 가구소득을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다⁵⁾. 이와 관련지어 최근 소득수준을 비교할 때 가구원수 또는 가구규모와 구성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소득수준에 반영하는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구균등화 지수 중 OECD가 권하고 있는 가구균등화 방법⁶⁾을 사용하였다. 이 가구균등화가처분소득을 지표로 삼아 연간소득으로 하고 이를 250만원 단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0원 미만=1, 1~250만원=2, 251~500만원=3부터, 4,500만원 이상=20 까지 20등급의 소득수준으로 재 코딩하여 등간 변수화 하였다. 금융자산 유무는 이분변수로서, 설문지 중 X(재산)-3(금융자산)의 5개 항목(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전부운계돈, 기타)을 모두 더해 그 합이 0인 경우를 금융자산 무로 하였고, 1원 이상이라도 있는 경우를 금융자산 유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 소득의 중위(median) 100%를 소득계층 이분의 기준 값으로 취하여 하위 50% 소득가구의 자영자(이하 하위소득 자영자)와 상위 50% 소득 가구의 자영자(이하 상위소득 자영자)의 연금가입 및 특성을 명확히 비교하고자 하였다.

5) 독립변수 중 소득수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소득수준만은 가구소득으로 정한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저소득 자영자의 경우 가구주 및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소득 중 가처분소득과, 가구규모와 구성비에 따른 생활비 차이 등 소득에 대한 가구 전반적 상황이 개인소득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자로 포괄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보다는 가구의 소득이 연금가입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이 방법은 가구균등화 규모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김수완 외, 2006),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금가입 및 연금선택 현황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 ‘연금가입여부’에 대하여는 로짓 회귀분석(binary logit regression)을, 또 다른 종속변수인 ‘연금가입유형’에 대해서는 다항 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짓 회귀분석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n(Px/Py) = b_0 + b_1(\text{연령}) + b_2(\text{성별}) + b_3(\text{교육수준}) + b_4(\text{사업지역}) + b_5(\text{업종}) + b_6(\text{소득수준}) + b_7(\text{금융자산유무})$$

(Px: 연금가입 확률, Py: 연금미가입 확률, Py=1-Px)

다항 로짓 회귀분석은 로짓 회귀분석의 단순한 확장으로서 종속변수가 3분변수일 때 여섯 개의 회귀식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공적연금만 가입’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두개의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ln(Pa/Pb) = ba_0 + ba_1(\text{연령}) + ba_2(\text{성별}) + ba_3(\text{교육수준}) + ba_4(\text{사업지역}) + ba_5(\text{업종}) + ba_6(\text{소득수준}) + ba_7(\text{금융자산유무})$$

$$\ln(Pc/Pb) = bc_0 + bc_1(\text{연령}) + bc_2(\text{성별}) + bc_3(\text{교육수준}) + bc_4(\text{사업지역}) + bc_5(\text{업종}) + bc_6(\text{소득수준}) + bc_7(\text{금융자산유무})$$

Pa: 공적 사적연금 모두 가입할 확률

Pb: 공적연금만 가입할 확률

Pc: 사적연금만 가입할 확률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및 연금가입 현황

<표 2>는 분석대상인 자영자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으며, 음식도소매와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분석대상 기초통계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연령		
20대	27	3.4
30대	170	21.4
40대	334	42.1
50대	262	33.0
성별		
남	546	68.9
여	247	31.1
업종		
음식도소매	252	31.8
농어업	123	15.5
제조업	53	6.7
건설업	55	6.9
운수업	96	12.1
기타 서비스업	214	27.0
금융자산		
없음	112	14.1
있음	681	85.9

<표 3>은 연금가입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공사 연금 중 어디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자영자 전체의 4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위 소득 자영자 중에서 공·사연금 미가입 비율은 절반이 넘는 52.1%이며, 상위소득 자영자 중에서도 공·사연금 미가입 비율이 28.4%로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사연금 중 어디에든 노후소득보장에 가입된 경우는 전체 자영자의 59.4%이

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자영자는 전체 자영자의 29.6%이며,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가입형 자영자들은 16.7%이다. 주목할 점은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여회피를 하고 대신 사적연금을 선택한 자영자 비율이 13.1%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연금만을 선택한 자영자들을 하위소득 자영자와 상위소득 자영자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소득이 비교적 높은 상위소득 자영자에서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소득 자영자에서 3.9%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자는 연금미가입자와 사적연금에만 가입한 자영자를 합친 집단으로 전체 자영자의 53.7%에 달하며, 이 중 상위소득 자영자 비율은 23.1%, 하위소득 자영자 비율은 30.6%이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자 집단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며, 국민연금 미가입 자영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3%(상위소득 자영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표 3. 연금가입유형 교차분석

(단위: 명, %)

연금선택유형	자영자			
	하위소득 자영자	상위소득 자영자	전체	
A. 연금 가입자 (A =a1+a2+a3)	195 (47.9)* (24.6)**	277 (71.4) (34.9)	472 (59.4)	
(a1)공·사 모두 선택 (다층가입형)	48 (11.8) (6.0)	85 (21.9) (10.7)	133 (16.7)	국민연금 가입자 (46.3)
(a2)공적연금만 선택 (국민연금형)	116 (28.5) (14.6)	119 (30.7) (15.0)	235 (29.6)	
(a3)사적연금만 선택 (사적연금형)	31 (7.6) (3.9)	73 (18.8) (9.2)	104 (13.1)	국민연금 미가입자 (53.7)
B. 연금 미가입자 (연금 사각지대)	212 (52.1) (26.7)	110 (28.4) (13.9)	322 (40.6)	
C. 전체(C=A+B)	397 (100) (50.0)	397 (100) (50.0)	794 (100)	

()*은 열 기준, ()**은 전체 자영자 대비 비율(%).임.

2. 로짓회귀분석: 연금가입 결정요인

가. 모형적합도 검증

독립변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종속변수의 평균만으로 저소득자영자의 연금가입 여부를 예측했을 때, 즉 기저모형(null model)일 때의 예측 적중도(predicted % correct)는 52.0%였으나, 일곱 개 독립변수를 예측변수로 투입한 회귀모형의 예측 적중도는 70.3%로 높아졌다. 또한 로짓 회귀분석에서 기저모형과 회귀모형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우도값, 즉 $-2\text{Log likelihood}(-2LL)$ 은 485.573으로 나타났고, 카이제곱(Chi-square)값은 75.604로 계산되었다. 다시 말해 기저모형과 회귀모형의 우도값($-2LL$)의 차이는 75.6104이며, 이 수치의 통계적 유의도는 자유도(df) 13에서 $\text{Sig}=.000$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정된 회귀모형과 기저모형 사이에 $-2LL$ 값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기저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소득자영자의 연금가입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와 그에 따른 로짓 회귀모형은 유의도 .001 이하 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반자영자에 대한 회귀모형 역시, 우도값($-2LL$)은 417.342로, Chi-square 값은 43.827로 계산되어, 통계적 유의도는 자유도 13에서 $\text{Sig}=.00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저소득자영자와 일반자영자의 연금가입 여부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 되었다. 전체자영자의 로짓 회귀모형 역시 유의도 .001 이하 수준에서 적합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기저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는 것은, 일곱 개의 독립변수 중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회귀모형에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연금가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며, 예측변수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된다.

나. 연금가입 결정에 미치는 요인

<표 4>는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자영자 전체를 보면 일곱 개의

독립변수 중 연령, 성별, 교육수준, 업종, 그리고 금융자산유무가 연금가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귀계수(B)의 부호는 연령, 성별, 업종(음식도소매업, 제조업), 소득수준이 정(+)으로 표시되었고, 교육수준(저학력)과 금융자산(무)이 부(-)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 ‘음식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가입확률이 높고,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서 연금 미가입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로짓 회귀분석 결과

구분	하위소득 자영자		상위소득 자영자		자영자 전체	
	B	S.E.	B	S.E.	B	S.E.
연령	.062***	.017	.036	.019	.049***	.012
성별(기준: 여성)	1.054***	.279	.582*	.274	.801***	.191
교육수준(기준: 고학력)						
저학력	-.898*	.371	-.755	.446	-.871**	.278
중간학력	-.446	.293	.003	.310	-.258	.208
사업지역(기준: 농어촌)						
대도시	-.266	.392	-.054	.450	-.199	.292
중소도시	-.368	.351	.184	.447	-.258	.275
업종(기준: 기타서비스업)						
음식도소매	.463	.309	.386	.302	.463*	.213
농어업	.251	.385	-.039	.458	.253	.287
제조업	1.575**	.564	1.393*	.668	1.510***	.422
건설업	-.444	.544	.687	.513	.209	.351
운수업	.329	.401	.606	.467	.423	.294
소득수준	.075+	.073	.125**	.041	.138**	.023
금융자산(기준: 유)						
상수	-1.515***	.296	-.570	.522	-.1283**	.244
상수	-3.404***	.953	-2.746	.968	-3.258**	.629

* p<.05 ** p<.01 *** p<.001, 종속변수: 연금미가입(0), 연금가입(1)

하위소득 자영자와 상위소득 자영자를 비교하여보면, 공통으로 연금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과 업종(제조업)의 두 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

령과 교육수준(저학력), 금융자산유무 변수는 저소득자영자에서, 소득수준 변수는 일반 자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업지역은 그 어느 집단에서도 통계적 유의미함이 없었다. 즉 남성과 제조업종사자는 하위소득 자영자 및 상위소득 자영자 모두에서 여성보다 또는 기타 서비스업종보다 연금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소득 자영자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에서 연금가입확률이 낮았으며, 상위소득 자영자 경우에는 금융자산 유무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금가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3.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연금가입유형 결정요인

가. 모형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예측변수로 투입된 변수들과, 종속변수로 택한 세 가지 연금선택 유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연구 모형으로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저소득자영자의 최종 회귀모형의 $-2 \text{ Log likelihood}$ 값은 291.021로, 기저모형(null model)의 $-2LL$ 값인 367.808보다 61.203만큼 향상되어 있다. 이 값은 곧 Chi-Square 값으로 자유도 2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Sig=.000)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기저모형의 그것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자영자 역시 회귀모형의 $-2LL$ 값이 520.297로 기저모형의 $-2LL$ 값 592.702보다 72.405만큼 증진되었다. 이 값 역시 자유도 26을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Sig=.000)하게 나타나 일반자영자에게 같은 회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충분히 좋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연금선택유형 결정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연금선택유형’은 공적연금만 선택, 사적연금만 선택, 공적사적연금 모두 선택의 세 가지 질적 명목변수이다. 이 중 ‘공적연금만 선택’을 다항 로짓 회귀분석을 실행함에 있어 종속변수의 기준범주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이 분석 모형에서는 사례수

가 가장 많은 집단을 기준범주로 선택하는 것이 추정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근, 2006). <표 5>는 ‘공적연금만 선택’을 기준범주로 하였을 때의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5. 다항 로짓 회귀분석 결과 종합

기준범주: 공적연금만 선택		하위소득 자영자		상위소득 자영자		자영자 전체	
		B	S.E.	B	S.E.	B	S.E.
사적연금만 선택	연령	-.211***	.047	-.070**	.027	-.101***	.021
	성별(기준 : 여성)	-.655	.655	-.006	.368	-.195	.308
	교육수준(고학력)						
	저학력	.696	.854	.806	.660	.425	.476
	중간학력	-.593	.587	-.017	.401	-.171	.308
	사업지역(농어촌)						
	대도시	.735	.901	1.007	.757	.849	.554
	중소도시	.107	.852	1.118	.748	.686	.541
	업종(ELSE)						
	음식도소매	1.044	.674	.598	.421	.639	.337
	농어업	-.115	1.103	-.989	.733	-.657	.576
	제조업	1.873+	1.105	1.587**	.627	1.847***	.596
	건설업	-1.167	3.021	.116	.665	-.082	.596
	운수업	.360	.878	-.373	.632	-.016	.488
	소득수준	-.262	.160	.075*	.050	.075*	.032
금융자산(유)	-1.957+	1.146	-21.395***	.000	-2.754**	1.076	
공사연금 모두선택	연령	-.053*	.031	-.007*	.026	-.016*	.019
	성별(기준 : 여성)	-.857	.543	.262	.371	-.051	.295
	교육수준(고학력)						
	저학력	-1.387*	.673	.688	.602	-.290	.416
	중간학력	-.065	.471	.107	.400	-.073	.287
	사업지역(농어촌)						
	대도시	1.231	.761	.679	.576	.804+	.435
	중소도시	.479	.678	.228	.576	.279	.422
	업종(ELSE)						
	음식도소매	1.208*	.598	1.301**	.432	1.115***	.331
	농어업	1.429+	.776	-.228	.644	.414	.455
	제조업	2.755**	.872	1.524*	.667	1.843***	.513
	건설업	1.043	1.003	1.306*	.577	1.062*	.474
	운수업	.794	.746	.669	.530	-.680+	.413
	소득수준	.016	.126	.157***	.048	.087**	.029
금융자산(유)	-2.050**	.792	-21.372**	.000	-2.098**	.660	

+ p<.1 * p<.05 ** p<.01 *** p<.001

이 표에 의하면 공적연금만 선택할 가능성에 비해 사적연금만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과 업종(제조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은 낮을수록, 업종은 제조업종사에서 공적연금보다 사적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적연금만 선택할 가능성에 비해 공적·사적연금 모두를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제적 변수(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유무)와 업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를 살펴보면, 자영자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과 금융자산유무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위소득 자영자와 상위소득 자영자로 나누어 본다면 하위소득 자영자 집단에서는 금융자산유무가, 상위소득 자영자집단에서는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하위소득 자영자 중 금융자산이 없는 집단은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선택할 확률이 금융자산이 있는 집단보다 낮고, 상위소득 자영자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에서는 음식도소매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이 하위소득 자영자와 상위소득 자영자의 구분 없이 공히 공적·사적 연금을 모두 선택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와 다층적 보장 등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요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자영자 중에서 공·사 연금 중 어느 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연금만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전체 자영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임금근로자 중 연금사각지대가 약 30% 수준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김수완, 2009)에 비하면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자들은 연금에 가입한 집단에 비해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하위소득 자영자이지만, 중

위소득 이상의 상위 50%에 속한 자영자들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자영자의 거의 1/4에 해당되고, 사적연금에는 가입했으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자도 전체의 약 13%로 나타나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의 적지 않은 비율이 '제도 회피'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전체 자영자의 16.7%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적연금만 선택한 자영자에 비해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연금가입이 크게 높은 편이며, 공적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에 비해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이 가장 많은 업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 특히 국민연금에의 가입 필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50대 연령층에서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김복순·반정호, 2011)는 사실은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이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되어있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영세 자영자에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큰 반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자영자 집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현실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다⁷⁾.

이러한 연구결과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세 자영자는 취약근로자 계층과 유사하게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저소득 등으로

7) 본 연구에서는 자영자 집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하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자영자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종 등을 고려한 좀더 세분화된 집단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임금근로자 집단과의 비교 등도 향후 연구에서 발전시킬 만한 연구주제이다.

인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저소득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료 지원방안을 영세자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동시에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자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영자가 우선적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 또한 일정소득 이상의 자영자 가구의 무급 가족종사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집단이고, 가구단위로 볼 때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독려가 자영자에 대한 일차적인 정책 개입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업주부들의 임의가입 급증 현상이나 추납 활성화 현상 등은 국민연금이 갖는 소득보장적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영자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으로서 개인연금만을 고려하였으나, 최근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자영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퇴직연금을 적용받던 임금근로자가 퇴직 후 자영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일단 퇴직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자가 된 후에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에 계속 가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연금의 유연한 발전으로 자영자의 다층보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는 향후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김수완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노인복지정책, 비교복지국가 및 젠더 이슈이며, 고령자의 일, 복지인식 등에 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soowankim@hanmail.net)

김상진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대학에서 학부 강의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이며, 현재 자영자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진행 중에 있다. (E-mail: sjkimsteve@hanmail.net)

8) 물론 이는 자영자의 소득과약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대안일 수는 있을 것이다.
9)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입자 인별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총경제조사팀(2007). KEF 리포트: 자영자 비율 선진국 대비 2배 높아. 經管界, 2007년 9월호, pp.66-69.
- 구인회, 백학영, 권은선(2007). 사회보장 사각지대 실태. 2006 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경아, 한정림(2011). 자영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원.
- 김상진(2009). 자영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2), pp.1-28.
- 김성숙, 강성호(200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터.
- 김수완(2009).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pp.253-283.
-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류재우, 최호영(2000).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논집, 23(1), pp.137-165.
- 박명호(2010). 우리나라 자영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추이 분석. 재정포럼, 2010년 3월호 pp.6-25.
- 석재은(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한국사회복지학, 53, pp.285-309.
- 안주엽, 성지미(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2), pp.1-30.
-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I)-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용하, 이충섭(200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방안. 서울: 국민연금연구센터.
- 이양현, 최임수(1997). 조세순응성향과 조세회피행위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6, pp.187-204.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pp.149-179.
- 최강식, 정진욱, 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8(1), pp.135-15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방안 중간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정화, 김완희(1997). 납세자의 특성과 탈세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연구-자영자의 소득세 문제 중심으로 세무학 연구, 10, pp.151-175.
- Bailey, C.(2001). Strategies to reduce contribution evasion in social security financing. *World Development*, 29(2), pp.385-393.
- Baldwin, P.(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schoff, K. S., Schmidt, C.(2010). Adapting labor law and social security to the needs of the 'new self-employed'-comparing the U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2), pp.147-159.
- Choi, J.(2009). Pension Schemes for the Self-employment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84, Paris: OECD.
- Corden, Anne(1999). Self-employed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Included or excluded?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2(1), pp.31-47.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3).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European Commission(2010). Self-employment in Europe 2010. *European Employment Observatory Review*.
- European Commission(2010). *Social Protection of the self-employed*. MISSOC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
- Lee, C.(2008). Retirement Expectations of Older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Comparison with wage and salary workers. *The Korean Economic Review*, 24(1), pp.33-70.
- OECD(2001).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nince OECD countries*. Paris: OECD.

A Study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of the Self-employed in South Korea

Kim, Soo-Wan

(Kangnam University)

Kim, Sang Jhin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Keywords: Self-employed, Public Pension, Private Pension, Multi-pillar System